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6-12 .
----------	-----------

제출연월일 : 2006. 3. 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리·통·반설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반의 설치 및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 현재 3개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통합조례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

폐지 조례	제정 조례
○ 사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통반설치 조례 ○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이·통장의 정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12조)

다. 반장의 정수·임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제20조)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70,000천원 증액(이·통장 단체보험 가입)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06. 2. 16 ~ 3. 7)결과 제출된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리·통은 3개반 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 2 장 이·통장

제3조(이·통장의 위촉 등) 이·통장의 위촉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이·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제5조(복무) ①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①이·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타 비밀엄수에 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 추석, 기념일 등에 위문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이·통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사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이·통장의 교체) 이·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원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근무) ①이·통장의 정위치는 이·통장 주소지로 한다.

②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이·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회인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 3 장 반 장

제13조(반장의 위촉과 정수) 반장의 위촉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장은 읍·면·동장 및 이·통장이 소집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 ①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제공) 반장은 사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9조(반상회) ①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사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사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④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장의 교체) 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반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 4 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통반설치 조례」,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는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 사무인계인수서

### 1. 부채·물품목록

부채·물품목록	단 위	수 량	비 고

### 2. 현물·현금 및 예금 현재고 조서

종 별	현 품	현 금	예 금	비 고

### 3. 미 결 사 항

위 인계·인수를 필함.

년 월 일

인계자	이·통장	인
인수자	이·통장	인
입회자	성 명	인

#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名稱과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名稱과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 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